

2020년도 제1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6. 18.(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심장섭,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02화)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정현순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216건(안건번호 제2020-47831호~4992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47831호는 티스토리 이용자가 음원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구글 드라이브 페이지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설정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49928호는 네이버 블로거가 일본 만화 번역본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20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0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정현순 전문위원: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8쪽의 저작권자, 저작물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해당 정보는 민원인 신고 건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비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D 위원, A 위원, B 위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부분 중 저작권자, 저작물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정현순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월트디즈니컴퍼니', '이십세기폭스', 'CJ ENM', '영국 BBC', '소니픽쳐스', '미국 ABC', 'tvN', '넷플릭스', '위너브라더스', '유니버설픽쳐스',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마블스튜디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C 위원, D 위원, A 위원, B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정현순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47831호~49928호로 3,21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7831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티스토리 블로거가 일본 애니메이션 '△△△△'의 오프닝곡 '△△△△ △△ △△' 음원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설정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게시물 제목을 “△△△△(△△△) △
△ △ △△△△ △△ △△ (△△△△△△△△△△△△△△)”으로 설정하
여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이미지를 클릭하
면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됨. 음원을 감상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할
수도 있음. 구글 드라이브는 게시자가 아니고서는 URL 주소를 알기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
정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 자신이 구글 드라이브에 음
원 파일을 업로드하고 직접 링크를 설정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함. 또
한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복수의 배너광고가 게재되어 있음. 게시자
는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
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47831호
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불법복제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사람과 링크를 설
정 및 제공한 사람이 동일인임을 확인했는지?
- 정현순 전문위원: 동일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 다만
구글 드라이브의 URL 주소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속성으로부터 불
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사람과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음.

- D 위원: 동일인일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로 판단됨.
- A 위원: 판례는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있음. 링크의 유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정현순 전문위원: 아주 단순하게 연결만 하는 링크는 단순 링크임. 직접 링크, 심층 링크는 웹사이트의 특정 웹페이지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링크를 말함. 임베디드 링크의 정의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통상적으로 웹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웹페이지에 해당 링크 음악, 이미지 등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직접 해당 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는 링크 방식을 말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구글 드라이브로 직접적으로 링크되어 있으므로 직접 링크 혹은 심층 링크에 해당함.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에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A 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되어 있는 판례는 타당한 논거가 될 수 없음. 대법원은 심층 링크 또는 직접 링크가 설정된 글을 게시한 자의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 방조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임베디드 링크를 통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민사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음.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직접링크에 대한 민사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아직 없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민사적인 의미에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권고를 가결하기에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됨.

- 정현순 전문위원: 법제상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링크행위의 형사 방조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함. 이와 반대로 서울고등법원은 방송사가 임베디드 링크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베디드 링크행위는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라고 판단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과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음. 현재로서는 링크행위가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민·형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임.
- D 위원: 하지만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영역은 임베디드 링크였고, 직접 링크가 아니었음.
- A 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을 수정해야 마땅함.
- 정현순 전문위원: 링크의 유형은 분류가 되지만, 모든 링크 유형은 기술적으로는 동일함. 불법복제물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그 불법복제물로의 연결 기능을 제공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올렸을 때, 링크 설정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논의의 구도나 쟁점은 같음.
- D 위원: 외국은 링크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예컨대 일본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리치사이트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다소 불

명확할 뿐더러 확립된 법원의 입장이 있는 것도 아님. 그렇다고 보호원은 링크 설정 게시물을 방치할 수만은 없음. 이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가결 의견의 논거를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음.

- B 위원: 법률상 시정권고의 대상은 “불법복제물등”임. 여기서 “불법복제물등”이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임. 기존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와 상관없이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시정권고를 가결해왔음. 이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다만 추후 심의에서는 링크행위에 대한 판례 설명부분을 보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당시에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이 많았음. 판례가 타당한 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하고 있고, 음원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사람과 링크를 설정 및 제공한 사람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 C 위원: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7831호는 게시물에

- C 위원: 가결 의견임.
- D 위원: 이의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992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정현순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7832호~49927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3,209건 게시물 모두 특별한 쟁점 없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음.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긴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안전은 어떤 안전인지?
- 정현순 전문위원: 본원의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에서 긴급하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건으로, 민원인 신고 건이거나 불법복제물이 최신 저작물인 경우임. 안전번호를 구성할 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최되는 분과에 배정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47832호~4992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D 위원, A 위원,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47832호~49927호

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7832호~4992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7831호~4992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25.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최현용